

## 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특약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1년 5월 6일
2. 개정내용: 제 5조, 제 10조 및 제 13조의 조문 내용 정정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특약</p> <p>제 1조 ~ 제 4조 (생략)</p> <p><b>제 5조 (가입금액)</b>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5,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.</p> <p>제 6조 ~ 제 9조 (생략)</p> <p><b>제 10조 (만기 후 이자)</b>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제 11조 ~ 제 12조 (생략)</p> <p><b>제 13조 (약관의 변경)</b>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	<p>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특약</p> <p>제 1조 ~ 제 4조 (좌동)</p> <p><b>제 5조 (가입금액)</b>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,000 상당금액 이상이며 <b>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</b></p> <p>제 6조 ~ 제 9조 (좌동)</p> <p><b>제 10조 (만기 후 이자)</b> <b>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/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</b></p> <p>제 11조 ~ 제 12조 (좌동)</p> <p><b>제 13조 (약관의 변경)</b>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<b>제6조</b>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 <p><b>&lt;부칙&gt;</b></p> <p>1.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2. 이 약관은 2015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3.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3.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	<p>조항의 오기</p>

	<p>4. 이 약관은 2016년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5. 이 약관은 2017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6.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7.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 <p>8. 이 약관은 2021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</p>	
--	---	--

**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: 적 용**